# 하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

하 남 시
【사회복지과】

# 하남시 이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의안제출연월일 : 2016. 2.번호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## 1. 제정이유

○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·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·사회적·정서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3조)
- 나. 위원회의 기능, 위원의 임기, 위원장의 직무 등을 정함(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)
- 다.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(안 제8조)
- 3. 제정조례안: 덧붙임
- 4. 신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- 5. 관계법령 발췌서: 덧붙임
- 6. 예산수반 사항: 위원회 참석수당 400천원/1회
  - 80,000원 × 5명 × 1회 = 400,000원

## 7. 입법예고 결과

가. 입법예고기간 : 2015년 11월 25일 ~ 12월 14일(20일간)

나. 의견내용 : 의견 없음

# 8. 부서협의 결과

가. 협의기간 : 2015년 11월 25일 ~ 12월 14일(20일간)

나. 의견내용 : 의견 없음

9. 기타 참고사항: 타시군 조례안

10. 관련부서 :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

# 하남시 이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아동복지법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하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아동"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- 2. "아동복지" 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·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·사회적·정서적 지원을 말한다.
- 3. "보호대상아동"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.
- 4. "지원대상아동"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·경제적·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.
- 제3조(구성) ① 하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, 홀수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남녀의 비율을 어느 한쪽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하남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되고,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담당국장이 된다.
  -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담당과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.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또는 하남시관할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

- 2. 변호사,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3.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
- 4. 그 밖에 시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④ 제3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.

### 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「아동복지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- 2.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
- 3.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
- 4.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
- 5.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
- 6.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
- 7.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
- 제5조(임기 등)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각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  -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  -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  - 1.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
  - 2.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
  - 3.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

- 4.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
- 5. 사망, 질병,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
- 제6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  -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  -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- 제7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 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-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8조(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  -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  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9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으로 한다.
- 제10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「하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

있다.

- 제11조(의견청취 등)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, 이 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12조(회의의 비공개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,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.
  - 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3조(회의록)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 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사회복지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·성명 팀장 직위·성명 담당자	사회복지과장 최정호 여성가족팀장 진일순 금미경
	성명·전화번호	(790-5477)

# 【 관계법령 발췌서 】

### 아동복지법

[시행 2015.9.28.] [법률 제13259호, 2015.3.27., 일부개정]

보건복지부(아동복지정책과) 044-202-3415

제12조(아동복지심의위원회) ①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각 구 둔다.

- 1.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- 2.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
- 3.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
- 4.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
- 5.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
- 6.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
- 7.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
-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·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# 아동복지법 시행령

[시행 2014.11.19.] [대통령령 제25751호, 2014.11.19., 타법개정]

보건복지부(아동복지정책과) 044-202-3415

- 제13조(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)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 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이 된다.
  -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된다.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4.6.11.>
  - 1. 시·도 교육청(시·군·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)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
  - 2. 변호사,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 - 3.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
  - 4. 그 밖에 시・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  - ④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 -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・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・도 또는 시・군・구의 조례로 정한다.

# 【 기타 참고사항 】

#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( 제정) 2013.04.01 조례 제2698호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아동복지법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**제2조(구성)** ①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어느 한 성(性)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  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.
  - ③ 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·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  - 1. 성남교육지원청 또는 성남시관할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
  - 2. 변호사,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 - 3.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
  - 4.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
  - ④ 제2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.

#### 제3조(기능)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아동복지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- 2.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
- 3.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
- 4.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
- 5.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
- 6.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
- 7.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,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각각 당해 직위에서의 재임기간과 같다.
  -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  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-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6조(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 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궐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.
- 제7조(간사 및 서기)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.
  - ② 간사는 성남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.
  -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- **제8조(수당과 여비지급)**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「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9조(자료 제출의 요구 등)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수 있다.

제10조(회의의 비공개)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.

제11조(회의록)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.

제12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## 부칙 〈제정 2013.04.01 성남시 조례 제2698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 용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( 제정) 2005.10.05 조례 제 696호 (일부개정) 2012.12.11 조례 제1264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(전문개정) 2014.11.05 조례 제1400호 제명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아동복지법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용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아동"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- 2. "아동복지"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·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·사회적 ·정서적 지원을 말한다.
- 3. "보호대상아동"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.
- 4. "지원대상아동"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・경제적・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.

제3조(구성) ① 용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하되, 홀수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남녀의 비율을 어느 한쪽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용인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되고,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.
-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,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.
- 1.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또는 용인고용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
- 2. 변호사,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3.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
- 4.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④ 제3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.

#### 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아동복지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- 2.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

- 3.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
- 4.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
- 5.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
- 6.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
- 7.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## 제5조(임기 등)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각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-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- 1.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
- 2.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
- 3.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
- 4.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
- 5. 사망, 질병,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

# 제6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-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-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### 제7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## 제8조(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-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9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으로 한다.
- 제10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「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11조(의견청취 등)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,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12조(회의의 비공개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,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.
  - 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3조(회의록)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## 부칙 〈2014. 11. 5 조례 제1400호, 전부개정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